#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[한근수 의원 대표발의]

의 안 번 호 417 발의연월일: 2024. 4. 4.

발 의 자 : 한근수, 김지훈(국), 이수련,

전혜연, 김지훈(민), 한송연,

김동훈, 정현미, 김영실,

워주영

#### 1. 제안 이유

가정 내 갈등, 가정해체,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 내용

가.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
다.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추진사업을 규정(안 제5조~제6조)

라. 청소년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# 5. 관계법령 :

- 가. 「청소년 기본법」
- 나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####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 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청소년"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2. "가정 밖 청소년"이란 가정 내 갈등·학대·폭력·방임, 가정해체,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.
  - 3. "청소년쉼터"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남양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가정 밖 청소 년의 발생을 예방하고,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1.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
  - 2.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3.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  -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- 제6조(추진사업)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·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
  - 2.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
  - 3.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
  - 4.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

- 5.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
-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「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청소년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③ 청소년쉼터의 설치 ·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8조(통합지원체계의 활용)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자치법규안명
  -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
- 재정 수반 요인
  - 제6조(추진사업 등)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·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「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2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선언적 ·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  -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 며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은 현재 추계가 어려움

## 4. 작성자 : 문화교육국 청년정책과장 박미경

## 관계법령

#### ☑ 「청소년 기본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·사회·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청소년"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- 2. "청소년육성"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,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.
- 3. "청소년활동"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·교류활동·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.
- 4. "청소년복지"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・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・경제적 지원을 말한다.
- 5. "청소년보호"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·물건·장소·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.
- 6. "청소년시설"이란 청소년활동·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.
- 7. "청소년지도자"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
  - 나.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
- 다. 청소년시설,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- 8. "청소년단체"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- 제14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

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.
-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·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·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시행계획의 수립,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☑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청소년"이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"청소년복지"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.
- 3. "보호자"란 친권자.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4. "위기청소년"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.
- 5. "가정 밖 청소년" 이란 가정 내 갈등·학대·폭력·방임, 가정해체, 가출 등의 사 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 다.
- 6. "청소년부모"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.
- 제9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, 청소년복지 및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5호 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 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 "통합지원체계"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・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·홍보·연구·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·시 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, 보호, 자립 지원,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·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(이하 "청소년복지시설"이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청소년쉼터: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 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
  - 2. 청소년자립지원관: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
  - 3. 청소년치료재활센터: 학습·정서·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 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·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 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
  - 4. 청소년회복지원시설: 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·주거·학 업·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제32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

- 야 한다.
- ④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 ⑤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・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・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·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- 제40조(예산의 보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,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